

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0월 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(2003년10월13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수도행정과장 박명호)

□ 제안이유

-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과 요금체계 개선에 따라 전용공업용수의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- 전용공업용의 상수도 요율중 누진단계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조정함. (안 제5조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86호
의결 년월일	2003. 10. 15 (제107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10. 1.

제출자 : 부천시장

제안이유

-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과 요금체계 개선에 따라 전용공업용수의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전용공업용의 상수도 요율중 누진단계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조정함(안 제5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 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1]

사 용 료 요 율 표(제5조관련)

(단위 : m³/원)

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		사용량요금	
계량기 구경별	요금	사 용 량	요금
13m/m	620	m ³ 당	200
20m/m	1,300		
25m/m	2,010		
32m/m	3,590		
40m/m	4,900		
50m/m	8,590		
75m/m	16,270		
100m/m	27,120		
150m/m	60,220		
200m/m	97,000		
250m/m	143,870		
300m/m	200,830		
350m/m	251,580		
400m/m	282,910		